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b>보 도 참 고 자 료</b>		
	2019. 4. 12. (총 8매)		
배 포 일			
감염병 총괄과	과 장	이동한	043-719-7120
	담당자	박광숙	043-719-7113
예방접종관리과	과 장	김유미	043-719-6810
	담당자	최연화	043-719-6819
바이러스분석과	과 장	최우영	043-719-8191
	담당자	정윤석	043-719-8192

## 인플루엔자 지속 증가, 감염 주의 당부

- ◇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 ◇ 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 ◇ 인플루엔자 진단 시 가정 내 충분한 휴식 후 열이 없는 경우 등원·등교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12주(3.17-23) 20.3명 → 13주(3.24-30) 27.2명 → 14주(3.31-4.6) **32.2** (/외래환자 1,000명당)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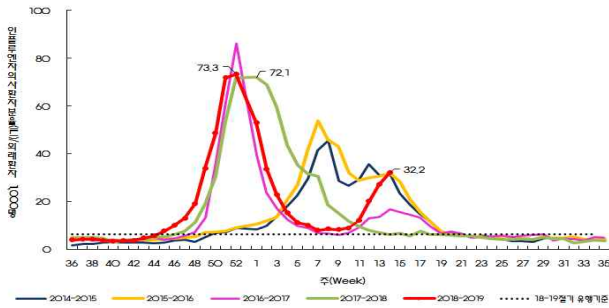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3명/1,000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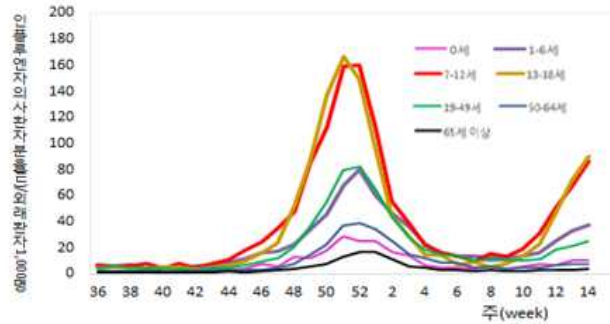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고, 7-12세에서 두 번째로 높아,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 (13~18세): 12주 47.9명 → 13주 71.6명 → 14주 90.0명 (/외래환자 1,000명)

\* (7~12세): 12주 51.9명 → 13주 67.1명 → 14주 86.6명 (/외래환자 1,000명)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하고,
-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어린이 및 학생 위생수칙 ▶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가지 않기
-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집에서 충분한 휴식 및 수분·영양 섭취
- ◇ 증상 발생 후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 하지 않도록 함

-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물 부작용 논란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에게는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환자 보호자에게는 발병 초기에 주의 깊은 환자 관찰을 당부하였다.
  -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의 흔한 부작용(2~15%)은 오심, 구토 등이며, 드물게 소아·청소년에서 섬망이나 환각 등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을 투약하지 않은 인플루엔자 환자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다.
  - 따라서, 소아·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붙임> 1.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2. 생활 속 예방수칙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3.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 붙임 1 인플루엔자 발생현황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인플루엔자 표본감시, 1차 의료기관 200개)
  - 18년 52주(73.3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9년 9주(2.24-3.2)부터 증가 추세
    - \* 2018-2019절기 유행기준 : 6.3명/1,000명

표1. 2018-2019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단위: 명)

구분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발생분율*/(1,000)	11.3	10.2	8.0	8.6	8.3	9.1	12.1	20.3	27.2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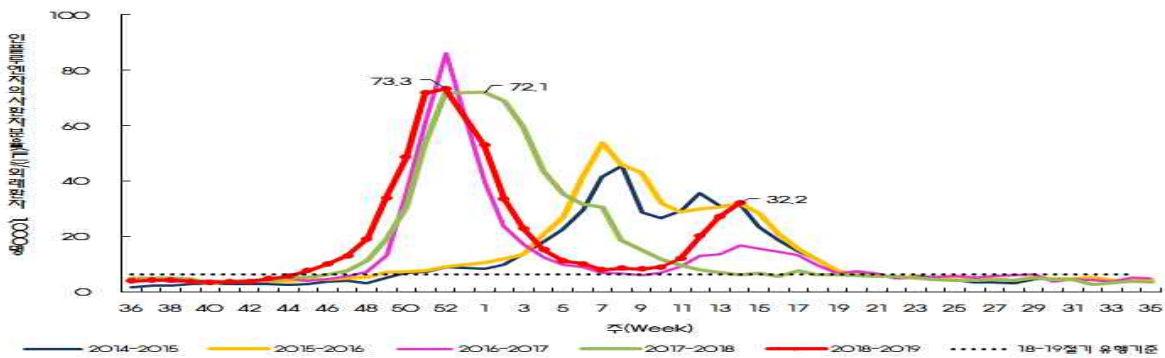


그림1. 절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표2. 2018-2019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구분	전체	0	1-6	7-12	13-18	19-49	50-64	65세 이상
10주	9.1	5.7	14.1	19.3	14.1	10.6	5.3	2.3
11주	12.1	7.8	16.7	30.9	22.8	11.1	5.3	2.6
12주	20.3	6.8	25.4	51.9	47.9	18.5	6.7	3.1
13주	27.2	10.1	32.9	67.1	71.6	21.7	8.0	3.1
14주	32.2	10.5	37.6	86.6	90.0	25.5	7.9	4.1

-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현황(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종합병원급 196개)
  - 제 14주(3.31-4.6)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533명으로 지난주(483명)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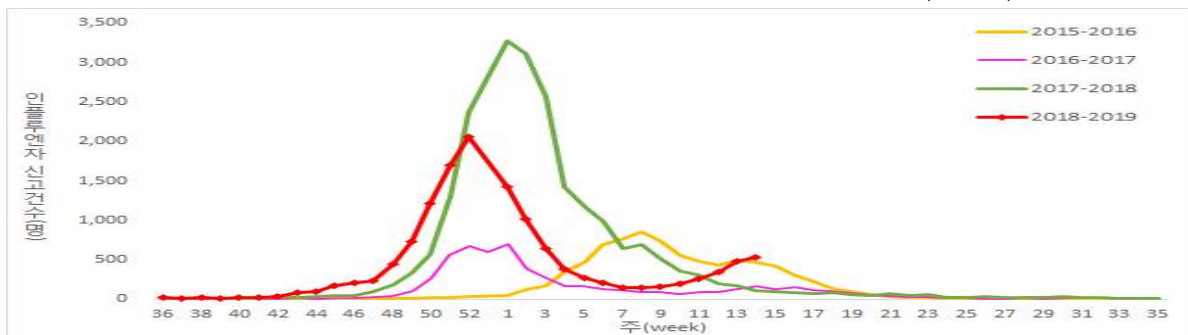


그림2.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수(명)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4주차에 98건 검출[A(H3N2): 21건, B형: 77건] 되었으며, 2018-2019절기 총 1,325건 검출[A(H1N1)pdm09: 757건, A(H3N2): 327건, B형: 241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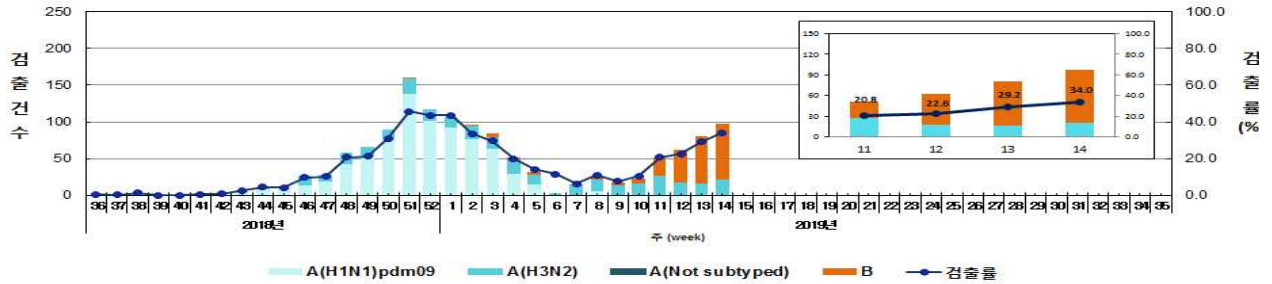


그림3.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표3. 2018-2019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현황 [단위: 건수(%)]

구분	A(H1N1)pdm09	A(H3N2)	A(Not subtyped)	B	총계
11주	0 (0.0)	27 (52.9)	0 (0.0)	24 (47.1)	51 (100.0)
12주	0 (0.0)	17 (27.4)	0 (0.0)	45 (72.6)	62 (100.0)
13주	0 (0.0)	16 (19.8)	0 (0.0)	65 (80.2)	81 (100.0)
<b>14주</b>	<b>0 (0.0)</b>	<b>21 (21.4)</b>	<b>0 (0.0)</b>	<b>77 (78.6)</b>	<b>98 (100.0)</b>
최근 4주 합계	0 (0.0)	81 (27.7)	0 (0.0)	211 (72.3)	292 (100.0)
이번절기 누계*	757 (57.1)	327 (24.7)	0 (0.0)	241 (18.2)	1,325 (100.0)

\* 이번절기 누계: 2018년 36주 ~ 2019년 14주(2018.9.2. ~ 2019.4.6.)

○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 A(H1N1)pdm09, A(H3N2)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전형이 유사하며, B형은 빅토리아형 234건, 야마가타형 7건임



## 붙임 2 생활 속 예방수칙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

###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① 예방접종 우선 권장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  
※ 건강한 학생, 성인 등도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 ② 비누를 사용하여 자주 손을 30초 이상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킵니다.
- ③ 기침, 재채기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 ④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합니다.
- ⑥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 □ 올바른 손씻기(30초 이상) 및 기침예절 지키기

1339  
1339-1111

감염병 예방은 내 손으로  
올바른 손씻기

올바른 손씻기는 감염병을 예방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1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 2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주세요
- 3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주세요
- 4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주세요
- 5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며 문질러주세요
- 6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땐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휴지나 손수건이 없을 때는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 붙임 3 항바이러스제 영양급여 적용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3호)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629]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p>	<p>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영양급여를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 확인된 경우.</li> </ul> </li> <li>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9세 이하</li> <li>-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li> <li>- 만 65세 이상</li> <li>- 면역저하자</li> <li>-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li> <li>- 심장질환(Cardiac disease)</li> <li>- 폐질환(Pulmonary disease)</li> <li>-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li> <li>- 간질환</li> <li>- 혈액질환</li> <li>-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li> <li>-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li> </ul> </li> </ol> <p>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함</p>
<p>[629]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p>	<p>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p> <p style="text-align: center;">- 아 래 -</p> <p>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영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p>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p>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1.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 확인된 경우.</li> </ul> <p>2. 인플루엔자주의보 발표 시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li> <li>-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li> <li>- 만 65세 이상</li> <li>- 면역저하자</li> <li>-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li> <li>- 심장질환(Cardiac disease)</li> <li>- 폐질환(Pulmonary disease)</li> <li>- 신기능장애(Renal dysfunction)</li> <li>- 간질환</li> <li>- 혈액질환</li> <li>- 신경계질환 및 신경발달 장애</li> <li>- 장기간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9세 이하 환자 등</li> </ul> <p>나.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p>